

신무기, 전투 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 검토에 관한 지침

1977년 제1추가의정서 제36조
이행조치



ICRC

신무기, 전투 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 검토에 관한 지침

1977년 제1추가협정서 제36조
이행조치

국제적십자위원회
2006. 1. 제네바

저자: 캐슬린 로윈드, 법률부 지뢰-무기처

도와주신 분: 로빈 쿠플란드 및 피터 허비, 법률부 지뢰-무기처

목 차

주요 내용	1
서 론	2
내용의 구성	5
1. 적법성 검토 체계의 적용 범위	7
1.1 적법성 검토 대상 무기 유형	7
1.2 법적인 근거: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규칙	8
1.2.1 특정 무기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	9
1.2.1.1 국제조약법에 따른 특정 무기의 금지 또는 제한	9
1.2.1.2 관습국제법에 따른 특정 무기의 금지 또는 제한	11
1.2.2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12
1.2.2.1 국제조약법에 따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12
1.2.2.2 관습국제법에 따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13
1.2.2.3 인도의 원칙 및 공공양심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마르텐스 조항”)	14
1.3 적법성 검토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험적 데이터	14
1.3.1 무기의 기술적 사양	15
1.3.2 무기의 기술적 성능	15
1.3.3 인체에 미치는 영향	15
1.3.4 환경에 미치는 영향	16
2. 검토 체계의 기능적인 고려사항	17
2.1 검토 체계는 어떻게 수립하는가?	17
2.1.1 입법, 규제, 행정명령, 훈령 또는 지침으로 수립하는가?	17
2.1.2 누가 검토 체계 수립을 주관하는가?	17
2.2 검토 체계의 구조 및 구성	18
2.2.1 적법성 검토는 누가 수행하는가?	18
2.2.2 적법성 검토에 어떠한 부서 또는 분야가 참여하는가? 어떠한 전문가들이 검토 에 참여하는가?	18
2.3 검토 과정	19
2.3.1 어떠한 단계에서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가?	19
2.3.2 적법성 검토는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가?	20
2.3.3 검토 중인 무기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출처로부터, 어떻게 수집되는가?	21

2.4	의사결정	21
2.4.1	적법성 검토 의견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21
2.4.2	검토 당국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또는 권고사항으로 취급하는가?	21
2.4.3	검토 당국은 신무기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가?	21
2.4.4	검토 당국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하는가 또는 재검토/재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가?	22
2.5	기록관리	22
2.5.1	검토 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22
2.5.2	검토 기록에 누가, 어떠한 조건 하에 접근할 수 있는가?	22
	연락처	24
부록 1 :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 제네바, 2003년 12월 2-6일, 인도주의 활동 의제 최종 목표 2.5	25
부록 2 :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상트 페테르부르크, 1868년 11월 29일 / 12월 11일	26
부록 3:	제1추가의정서 조항 발췌	27

주요 내용

본 지침서는 제네바협약 제1추가협정서 제36조에 따라 국가들이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또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지침서는 2001년 1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주최한 전문가 회의 및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제네바협약 체약국들이 채택한 인도주의 활동 의제 (Agenda for Humanitarian Action)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인도주의 활동 의제는 국가들이 모든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을 준수하는데 있어 철저하고, 다각적인 차원의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추가협정서 제36조는 각 국가들이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하는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이 일부 또는 모든 상황에서 있어 국제법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는지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제1추가협정서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신무기 적법성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신무기 적법성 평가는 일국의 군대가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면서 적대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제안된 신무기에 대한 법적 검토의 수행은 오늘날 특히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성을 가진다.

제1추가협정서 제36조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제36조 내용에 대한 해석과 국가관행을 기초로 본 지침서는 일부 중요한 이슈와 적법성 검토 체계 수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절차들을 기술한다.

적법성 검토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무기를 비롯하여 무기가 사용되는 방식에도 적용되며, 전투수단은 무기의 예상 사용 방법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적법성 검토의 법적인 토대는 국제인도법 등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특히, 특정 무기에 대한 조약, 관습적 금지 및 제한을 비롯하여 모든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국제인도법 규칙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규칙에는 무기의 무차별적 효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전투원들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칙들이 포함된다. 관련 규칙에 따른 무기 평가에는 동 무기의 기술적 사양과 실제 성능 등 해당 무기에 대한 경험적 정보 일체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검토 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검토 체계 수립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적인 이슈로는 어떠한 정부 부처가 적법성 검토를 주관하는지, 검토 과정에 누가 참여하는지, 무기 조달 과정의 어떠한 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시행되는지를 비롯하여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 관련 절차가 있다. 본 지침서는 검토 체계의 형태에 관계없이 신무기 적법성 검토에 있어 공정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국가들이 자국의 검토 절차에 대해 상호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무기의 사용이 가져오는 단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기의 사용이 가져오는 장점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 손자(孫子), 손자병법, 기원전 500년

현재 국가들이 손에 쥐고 있는 새롭고, 두려운 살상 무기들은 미래의 전쟁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미래의 전투는 보다 잔인해질 것이다.

- 앙리 뒤낭, 솔페리노의 회상, 1862년

[국제군사]위원회는 전쟁의 필요가 인도적 요건을 우선하지 않는 기술적인 한계를 설정하는데 동의한다...

-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1868년

서론

전투원들이 전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권리¹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² 이는 무력충돌법 또는 전쟁법으로도 알려진 국제인도법의 기본 개념이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일련의 규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거나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 민간인, 부상자, 병자, 체포된 전투원), 적대행위 (즉, 전투수단 및 방법)의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인도법은 고통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경감시키기 위해 전시의 무장 폭력을 제한한다. 국제인도법은 전쟁만큼이나 오래된 규범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사회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국제인도법의 규칙들은 지난 150여 년 간 각종 국제 조약에서 제안, 성문화되어 왔으며,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를 비롯하여, 문화재, 아동병사, 국제형사재판, 특정 무기의 사용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여러 다른 조약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어 왔다. 다수의 국제인도법 규칙들은 국가들이 법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그러므로 무력충돌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에게도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적이고, 대표적이며,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국가 관행에 의거하여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투원들이 전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적대행위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의 기본 규칙에 의해 제한되며, 이 중 상당 수의 규칙들은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1977년 제1추가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다.³ 다른 조약들은 생화학 무기, 소이성 무기, 실명(失明)레이저 무기, 지뢰 등 특정 무기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습국제법에서도 다수의 기본 규칙

1 “전투수단 및 방법”이란 용어는 전쟁의 도구와 이러한 도구가 사용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1977년 6월 8일 작성, [이하 “제1추가의정서”]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 (제35조(1), (3), 51조(5)(가), 55조(1)), “전투방법 및 수단” (3편 및 3편 1장 표제), “공격의 수단 및 방법” (제57조(2)(가)(2)), “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 (제36조)이란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 동 원칙은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 규칙 제22조와 제1추가의정서 제35조(1)에 명시되어 있다.

3 제1추가의정서에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에 대한 제한과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3편 1장, 4편 1장, 1절 내지 4절을 참고.

과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특정 금지 및 제한을 찾아볼 수 있다.⁴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새로운 군사기술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룬 최초의 국제 법률문서는 1868년 국제군사위원회 (International Military Commission)가 채택한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이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은 미래의 무기 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체약국 또는 가입국은 과학이 군대의 군사력 증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제안되는 경우, 이들이 수립한 원칙을 유지하고, 인도적 법률에 따라 전쟁의 필요를 조정하기 위해 차후 양해에 이를 수 있다.”⁵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또 다른 국제조약은 1977년 제1추가협정서 제36조이다: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 개발, 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제36조는 무기가 개발, 획득 또는 국가 무기고로 편입되기 전에 동 무기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모든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기의 사용을 예방하고, 일부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무기의 사용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1추가협정서 체약국 여부에 관계없이 -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 모든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들이 불법적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을 사용하거나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부터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들은 자국이 개발 또는 획득하는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⁶ 특히,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의 수행은 오늘날 신무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졌다.

제36조는 국제인도법과 “이 문제에 있어 군대에 시달되는 적절한 지시”에 관하여 군지휘관에게 자문을 하는 법률고문을 항시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제1추가협정서 제82조로 그 내용이 보완된다. 이 두 조항은 계획중인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통해 군대가 국제인도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적대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틀을 제공한다.

제36조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제36조는 국가는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을 제1추가협정서 조항과 기타 관련 국제법 규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추가협정서 해설에 따르면, 제36조는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다른 체약

4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조약, 특정 조약 및 관습 국제인도법은 본 지침서의 1.2장을 참고.

5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1868년 11월 29일 / 12월 11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전문(全文)은 본 지침서의 부속서 II를 참고.

6 스웨덴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 이들 국가는 제1추가협정서가 채택되기 이미 3년 전인 1974년에 공식적인 무기 적법성 검토 체계를 수립하였다.

국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국가 관행이 많지 않고, 오직 소수의 국가만이 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 체계 또는 절차를 갖고 있다.⁸

무기 적법성 검토의 중요성은 다수의 국제적인 포럼에서 강조되어 왔다. 1999년 개최된 제27차 국제적십자자신월회의는 국가들이 “무기를 현재 무기고에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조달, 개발

7 Y. Sandoz, C. Swinarski, B. Zimmerman (eds.), *Commentary on the Additional Protocols of 8 June 1977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ICRC, 제네바, 1987년 [이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해설”], 1470 및 1482. 계약국들은 자국이 채택하는 절차를 제1추가의정서 제84조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의 주석 96 및 해당 내용을 참고.

8 무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국가적인 체계를 갖고 있으며, ICRC에 이러한 체계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문서를 제공한 국가들을 다음과 같다: **호주**: *Legal review of new weapons* (신무기 적법성 검토),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 Instruction (General) OPS 44-1, 2 June 2005 [이하 “호주 국방부 지침”]; **벨기에**: *Défense, Etat-Major de la Défense, Ordre Général - J/836* (18 July 2002), *La Commission d'Evaluation Juridique des nouvelles armes, des nouveaux moyens et des nouvelles méthodes de guerre*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적법성 검토 위원회) [이하 “벨기에 일반명령”]; **네덜란드**: *Beschikking van de Minister van Defensie* (Directive of the Minister of Defence) nr. 458.614/A, 5 May 1978, *Adviescommissie Internationaal Recht en Conventioneel Wapengebruik* (국제법 및 재래식 무기 사용에 관한 위원회) [이하 “네덜란드 국방부령”]; **노르웨이**: *Direktiv om folkerettslig vurdering av vapen, krigforingsmetoder og krigforingsvirkemidler*, (무기, 전투방법 및 수단의 적법성 검토에 관한 명령), Ministry of Defence, 18 June 2003 [이하 “노르웨이 국방부령”]; **스웨덴**: *Förordning om folkrättslig granskning av vapenprojekt* (무기 사업의 국제법 검토에 관한 법령), Swedish Code of Statutes, SFS 1994:536 [이하 “스웨덴 모니터링 법령”]; **미국**: *Review of Legality of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따른 무기 적법성 검토), US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5500.15, 16 October 1974; *Weapons Review* (무기 검토), US Department of Air Force Instruction 51-402, 13 May 1994 [이하 “미공군 지침”]; *Legal Services: Review of Legality of Weapons under International Law* (법률 서비스: 국제법에 따른 무기 적법성 검토), US Department of Army Regulation 27-53, 1 January 1979 [이하 “미육군 규정”];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the 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방위사업 시스템 및 연합방위능력 통합 및 개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US Department of Navy, Secretary of the Navy Instruction 5000.2C, 19 November 2004 [이하 “미해군 지침”]; *Policy for Non-Lethal Weapons* (비치명적 무기 정책),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3000.3, 3 July 1996 [이하 “비치명적 무기 관련 지침”];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방위사업 시스템), US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000.1, 12 May 2003 [이하 “미 방위사업에 관한 명령”]. 프랑스와 영국은 국방부지침에 따라 적법성 검토를 수행한다고 ICRC에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영국의 절차는 영국 국방부, *The Manual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무력충돌법 편람),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119, 6.20.1 [이하 “영국 군사편람”]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 군조달청 (Federal Agency for Defence Procurement (BWB))은 연방국방부 (Federal Ministry of Defence) 산하 군사기술부 (Defence Technology Department)의 지시에 따라 “최초 조달 단계에서의 국제법 준수 테스트에 관한 편람 - 국제적인 무기통제 의무 및 국제인도법”의 제작을 발주하였으며, 이는 2000년에 출판되었다: Rudolf Gridl, *Kriterienkatalog zur Überprüfung von Beschaffungsvorhaben im Geschäftsbereich des BWB/BMVg mit volkerrechtlichen Vereinbarungen: Internationale Rüstungskontrolle und humanitäres Völkerrecht, Ebenhausen im Isartal: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2000년. 제36조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존의 검토 체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Lt. Col. Justin McClelland, "The review of weap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of Additional Protocol I"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따른 무기 검토),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5, No 850 (2003년 6월), pp. 397-415; I.Daoust, R. Coupland and R. Ishoey, "New wars, new weapons? The obligation of States to assess the legality of means and methods of warfare" (새로운 전쟁, 새로운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 평가에 관한 국가의 의무),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Vol. 84, No 846 (2002년 6월) pp. 359-361; Danish Red Cross, *Reviewing the Legality of New Weapons* (신무기 적법성 검토), 2000년 12월.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국가들이 “이러한 체계, 절차 및 평가와 관련된 각종 정보와 투명성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교환하도록” 장려하였다.⁹

2001년 개최된 특정재래식무기 협약에 대한 제2차 검토 회의에서 국가들은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서 명시하는 검토를 수행하여,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이 국제인도법 또는 기타 관련 국제법 규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도록 촉구하였다.¹⁰

200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는 “국제법에 따른 신무기의 적법성”을 추구한다는 목표에 합의, 이를 재강조하였으며, 이는 “신무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무기의 무차별적인 효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금지 무기로부터 전투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¹¹ 동 회의는 모든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은 “엄격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검토에는 군사, 법적, 환경 및 의료와 관련 고려사항들이 포함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¹² 또한, 동 회의는 국가들이 “특히, 의무요원이 잘 알지 못하는 영향을 인체에 미치는 모든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것”을 장려하였다.¹³ 마지막으로, 동 회의는 검토 절차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초청하여 이들이 자국의 검토 절차 경험을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ICRC와의 협조를 장려하였다.¹⁴

본 지침서에서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이란 용어는 전투의 수단과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문서의 분량을 고려하여 본 지침서에서는 이를 “무기”로 축약하여 사용하되, 내용에 따라 “전투수단,” “전투방법,” “전투수단 및 방법,”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¹⁵

내용의 구성

본 지침서는 두 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은 제36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의 적용 범위 등을 주로 다루며, 제2장은 형식 및 절차와 같은 기능적인 고려사항들을 다룬다. 기능적인 고려사항을 다루기 앞서 조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다루는 것은 적용 범위를 이해하여야만 기능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적법성 검토의 수행 목적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검토를 수행하는데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9 1999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7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 ~2003년 행동계획 (Plan of Action)의 최종목표 (Final Goal) 1.5장, 21. 동 회의는 “국가들과 ICRC는 이러한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협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10 특정재래식무기협약에 대한 제2차 검토 회의 최종 선언문, 제네바, 2001년 12월 11~21일, CCW/CONF.II/2, 11 페이지. 전문(全文)은 <http://disarmament.un.org:8080/ccw/ccwmeetings.html> 참고.

11 2003년 12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채택된 인도주의 활동 의제 최종목표 2.5 [이하 “인도주의 활동 의제”]. 최종목표 2.5의 전문(全文)은 본 지침서의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다. 동 회의에서 캐나다와 덴마크는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개발 또는 획득에 대한 자국의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약을 하였다.

12 상동 2.5.1.

13 상동 2.5.2.

14 상동 2.5.3.

15 주석 1과 1.1장을 참고.

1장은 적법성 검토 체계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제들을 다룬다:

- 어떠한 유형의 무기가 적법성 검토 대상이 되는가? (1.1장)
- 적법성 검토에서 이러한 무기들에 어떠한 규칙들이 적용되는가? (1.2장)
- 적법성 검토에서 어떠한 요소와 경험적인 데이터를 고려해야 하는가? (1.3장)

2장은 적법성 검토 체계의 기능적인 고려사항과 관련된 다음의 의제들을 다룬다:

- 적법성 검토 체계의 수립 (2.1장): 어떠한 법률문서로, 누가 검토 체계를 수립하는가?
- 적법성 검토 체계의 구조 및 구성 (2.2장): 누가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가? 어떠한 부처 또는 분야가 참여하는가?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가?
- 적법성 검토 수행 절차 (2.3장): 어떠한 단계에서 신무기 검토를 수행하는가? 검토 절차는 누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검토 중인 무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는가?
- 의사결정 (2.4장): 검토 의견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결정은 정부에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또는 권고사항으로 취급하는가? 신무기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가? 검토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하는가 또는 재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가?
- 기록관리 (2.5장): 검토가 수행되었고, 결정이 내려진 검토 건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기록에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조건이 적용되는가?

1. 적법성 검토 체계의 적용 범위

1.1 적법성 검토 대상 무기 유형

제1추가협약 제36조는 “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제네바협약 추가협약 해설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방법 및 수단’이란 용어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무기를 비롯하여 무기가 사용되는 방식을 포함한다. 어떠한 무기는 해당 무기의 사용 자체가 불법적일 수 있고 또는 일부 특정 상황에서만 불법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기의 기본적인 특성상 필연적으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정밀성이 낮은 모든 무기가 불법적이듯이 독은 그 자체적으로 불법이다. (...) 그러나 정밀성이 있는 무기도 민간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무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 무기가 사용되는 방법 또는 방식이 금지되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제36조에 따른 적법성 검토의 적용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인 또는 대물, “치명적”, “비치명적” 또는 “덜 치명적”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무기 및 무기 체계;¹⁷
- 군사 교리, 전술, 교전수칙, 운영절차 및 대응책에 따라 이러한 무기가 사용되는 방식;¹⁸
- 군사규격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조달하는 무기 및 “상용화된 무기 (off the shelf)”를 포함하여 군이 획득하는 무기 일체;¹⁹
- 기술적인 의미에서 “신” 무기가 아닐지라도 국가가 처음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²⁰

16 제네바협약 추가협약 해설, 1402, 강조는 필자.

17 호주 국방부지침 3(a)장은 동 지침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기”라는 용어를 “파괴, 부상, 패배 또는 위협을 목적으로 전투에서 사용되는 공격적 또는 방어적 수단으로 이에는 무기 체계, 탄약, 부속폭탄, 목표물설정 장치와 손상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기타 방식이 포함된다”고 정의한다. 벨기에 일반명령 1(a)장은 동 명령의 목적과 관련하여 “무기”라는 용어를 “무기, 무기 체계, 발사체, 탄약, 화약 또는 폭발물 일체로 전투원 및/또는 사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정의한다 (비공식 불영 번역). 노르웨이 국방부령 1.4장은 “무기”란 용어를 동 국방부령의 목적과 관련하여 “모든 전투수단, 무기 체계 / 프로젝트, 물질 등으로 탄약 및 이와 유사한 무기의 기능적 부분 등 특히 전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모든 “무기 또는 무기 체계”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다: 미육군 규정 2(a)장; 미해군 지침, p. 23, 2.6장; 미 방위사업에 관한 명령, p. 8, E.1.1.15장을 참고. 미 국방부 전쟁법실무그룹(Law of War Working Group)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표준 정의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기”라는 용어는 “사람 또는 사물에 부상, 손상, 파괴 또는 무력화하기 위한 효과를 의도하는 모든 무기, 탄약, 자재, 도구, 수단 또는 장치”를 의미하며, “무기 체계”라는 용어는 “무기 그 자체와 동 무기의 사용에 필요한 모든 요소로 무기 또는 무기 체계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중대한 법적, 정책적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포함한다. 무기 체계는 사람 또는 사물에 직접적인 손상 또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는 기술로 제한된다 (모든 탄약과 발사체, 소화기, 지뢰, 폭발물 및 물리적으로 파괴 또는 부상을 야기하는 일체의 장치와 기술을 포함)”. W. Hays Parks,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rmy, "Weapons Review Programme of the United States"를 참고, 동 문서는 무기 적법성 검토에 관한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on Legal Reviews of Weapons) 및 SirUS 프로젝트에서 발표됨, Jongny sur Vevey, Switzerland, 29-31 January 2001 (동 내용 및 회의 보고서에 대한 기록은 ICRC가 관리한다).

18 노르웨이 국방부령 1.4장 및 2.4장 참고.

19 본 지침서의 2.3.1장 참고.

20 제네바협약 추가협약 해설, 1472.

- 무기의 기능이 변경되도록 변형된 기존 무기 또는 적법성 검토 통과 후 변형된 무기;²¹
- 무기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조약에 국가가 가입한 경우, 동 국가의 기존 무기.²²

연구, 개발 또는 획득이 제안된 장치 또는 시스템이 “무기” 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무기 검토 당국의 법률 자문을 구한다.

무기 또는 전투수단은 무기가 사용되는 전투방식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없다. 무기의 적법성은 무기의 설계 또는 의도된 원 목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예상되는 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특정 방법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제36조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36조는 “체약당사국은 - 일부 또는 모든 상황에 있어 -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조는 필자).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해설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는 “무기의 일반적인 또는 예상되는 사용이 일부 또는 모든 상황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의무가 있다. 거의 모든 무기는 금지된 방식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무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남용 사례를 예측 또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²³

1.2 법적인 근거: 신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규칙

신무기의 적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검토 당국은 조약 또는 관습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기존의 국제법 규칙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추가의정서 제36조는 동 의정서를 비롯하여 국가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을 언급한다. 관련 규칙에는 모든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일반적인 규칙과 특정 무기 또는 전투수단을 금지하거나 이들의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국제인도법의 특정한 규칙과 국제법이 포함된다.

우선, 검토 중인 특정 무기 또는 전투수단의 사용이 검토 국가에 구속력 있는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여야 한다 (아래 1.2.1장 참고). 만약 적용되는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음에는 검토 중인 무기 또는 전투수단의 사용과 이들의 일반적인 또는 예상되는 사용 방법이 제1추가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일반 규칙과 검토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 기타 조약 또는 관습국제법을 준수하는지 판단한다 (아래 1.2.2장 참고). 적용되는 관련 조약 또는 관습적 규칙이 부재한 경우, 검토 당국은 제안된 무기를 인도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아래 1.2.2.3장 참고).

신무기 적법성 검토를 위한 공식적인 체계를 수립한 국가 중 일부는 검토 당국이 검토 시점의

21 호주 국방부지침 2장, 3(b)와 동 내용의 각주 3; 벨기에 일반명령 5(i), (j); 노르웨이 국방부령 2.3장; 미공군 지침 1.1.1, 1.1.2, 1.1.3장; 미육군 규정 6(a)(3)장을 참고.

22 노르웨이 국방부령 2.2장 (“법적 검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히, 노르웨이가 새로운 국제적 법적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 기존의 무기, 전투방법 및 수단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2.6장 (“또한, 가까운 미래에 노르웨이에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들을 고려한다. 나아가, 노르웨이가 국제적으로 제안하는 국제법에 관한 견해에 특별히 중점을 둔다.”), 미공군 지침 1.1.3장을 참고.

23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해설, 1469, 강조는 필자.

관련 법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개정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는 가까운 미래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의 승인 및 조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값 비싼 대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래에서는 관련 조약 및 관습적 규칙들을 다루나 이들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하지 않는다 (예.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인지 또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지 등). 이는 관련 조약 또는 관습적 규칙을 직접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규칙들은 모든 무력충돌의 유형에 적용됨을 명시한다. 금지된 전투수단 및 방법과 관련하여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상소심재판부가 내린 타디치 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 전쟁에서 비인간적인 것이고 금지된 것은 내전에서도 비인간적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²⁵

1.2.1 특정 무기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

1.2.1.1 국제조약법에 따른 특정 무기의 금지 또는 제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는 국가가 체결한 특정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특정 무기가 사용되는 방법을 제한하는 국제 법률문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연대기준):²⁶

-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상트 페테르부르크, 1868년 11월 29일 / 12월 11일 (이하 “1868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 질식가스에 관한 선언 (2), 헤이그, 1899년 7월 29일.
-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금지에 관한 선언 (3), 헤이그, 1899년 7월 29일.
-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IV) 및 관련 부속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 헤이그, 1907년 10월 18일, 제23조(a), 이에 따라 독 또는 독성 무기의 사용이 금지됨.
- 자동 접촉기뢰 설치에 관한 협약 (VIII), 헤이그, 1907년 10월 18일.
-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사용 금지에 관한 의정서, 제네바, 1925년 6월 17일.
- 세균무기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작성, 1972년 4월 10일.

24 영국 군사편람 p. 119, 6.20.1장을 참고 - "검토 과정은 검토 시점 당시에 존재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력충돌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려고 시도한다." 노르웨이 국방부령 2.6장을 참고 - "또한, 가까운 미래에 노르웨이에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의 관련 규칙들을 고려한다." 또한,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나아가, 노르웨이가 국제적으로 제안하는 국제법에 관한 견해에 특별히 중점을 둔다."

25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단 대 타디치 사건 (Prosecutor vs. Tadic),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Appeals Chamber), 1995년 10월 2일, Case no. IT-94-1, para. 119 & 127.

26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제외하고, 법률문서만 참고문헌으로 사용하였으며, 동 법률문서에 포함된 특정 금지 또는 제한은 참고문헌으로 포함하지 않음.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1976년 12월 10일 (ENMOD 협약).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제네바, 1980년 10월 10일, 제1조 개정 2001년 12월 21일. 동 협약에는 5개의 의정서가 있다:
 - 탐지불가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제네바, 1980년 10월 10일
 -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제네바, 1980년 10월 10일; 또는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1980년 협약 제2의정서는 1996년 5월 3일 개정됨)
 - 소이성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제3의정서), 제네바, 1980년 10월 10일
 - 실명(失明)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1980년 협약 제4의정서), 1995년 10월 13일
 -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 (제5의정서), 2003년 11월 28일.²⁷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파리, 1993년 1월 13일
-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7년 9월 18일.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998년 7월 17일, 제8조(2)(나)(17) 내지 (20), 이에는 동 규정의 목적상 전쟁범죄의 정의에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행동이 포함된다:²⁸

“(17)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

“(18) 질식가스, 유독가스 또는 기타 가스와 이와 유사한 모든 액체, 물질 또는 장치의 사용;

“(19) 총탄의 핵심부를 완전히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절개되어 구멍이 뚫린 단단한 외피를 가진 총탄과 같이,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

“(20)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지거나 또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무차별적 성질의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의 사용. 다만, 그러한 무기, 발사체, 장비 및 전투방식은 포괄적 금지의 대상이어야 하며, 제121조와 제123조에 규정된 관련 조항에 따른 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부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²⁹

27 전쟁잔류폭발물에 관한 의정서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는 않으나 그 자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간주되는 무기의 전후 영향을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동 의정서 제9조는 협약국들이 “기술적 부속서 3편에 명시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쟁잔류폭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

28 이는 새로운 국제인도법 규칙이 아니라 기타 조약 및 관습국제법에 따른 기존의 금지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29 동 규정의 작성 시점에는 이러한 부속서가 부재하였음.

1.2.1.2 관습국제법에 따른 특정 무기의 금지 또는 제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가는 관습국제법에 따른 특정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습국제인도법³⁰에 관한 ICRC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독이나 독성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³¹
- ➔ 생물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³²
- ➔ 화학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³³
- ➔ 전투방법으로의 폭동진압제 사용이 금지된다.³⁴
- ➔ 특정 상황에서 전투방법으로의 제초제 사용이 금지된다.³⁵
- ➔ 인체 내에서 쉽게 확장되거나 펼쳐지는 총탄의 사용이 금지된다.³⁶
- ➔ 인체 내에서 폭발하는 총탄의 대인 사용이 금지된다.³⁷
- ➔ 인체 내에서 엑스레이로 탐지할 수 없는 파편으로 부상을 야기하는 것이 주요 영향인 무기의 사용이 금지된다.³⁸
- ➔ 국제인도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 조치가 보장되는 사물 또는 사람과 관련된 부비트랩 또는 민간인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물과 관련된 부비트랩의 사용이 금지된다.³⁹
- ➔ 지뢰를 사용하는 경우, 지뢰의 무차별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질적 적대행위의 종료 후, 지뢰를 사용한 충돌 당사자들은 지뢰를 제거하거나, 민간인에게 무해하도록 무해화 하거나, 지뢰제거를 촉진하여야 한다.⁴⁰

30 J.-M. Henckaerts와 L. Doswald-Beck (ed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년.

31 상동, Vol. I, 규칙 72, 251.

32 상동, 규칙 73, 256.

33 상동, 규칙 74, 259.

34 상동, 규칙 75, 265.

35 상동, 규칙 76, 265. 동 규칙은 전투방법으로의 제초제 사용이 금지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만약 제초제가: a) 특성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경우; b) 특성상 금지된 생물무기인 경우; c) 군사목표가 아닌 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d)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e)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6 상동, 규칙 77, 268.

37 상동, 규칙 78, 272.

38 상동, 규칙 79, 275.

39 상동, 규칙 80, 278.

40 상동, 규칙 81-83, 280, 283, 285. 규칙 82는 지뢰를 사용하는 무력당사자는 지뢰 설치 장소를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 소이성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투능력을 상실한 자로 만들기 위해 덜 유해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소이성무기의 대인 사용은 금지된다.⁴¹
- ➡ 유일한 기능 혹은 여러 기능 중의 일부가 시력강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시각 기관(裸眼)에 영구 실명을 유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레이저무기의 사용은 금지된다.⁴²

1.2.2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검토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금지 또는 제한이 부재한 경우, 모든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조약 및 관습국제법이 명시하는 일반적인 금지 또는 제한에 의거하여 검토 대상인 무기 또는 전투수단과 이들의 일반적인 또는 예상되는 사용 방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아래 명시된 규칙들은 일반적으로 군 지휘관이 해당 시점에서의 충돌 환경과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을 고려하여 상황 별로 전장에서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상황 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은 전장에서 신무기가 실제로 사용되기에 앞서 신무기의 적법성 검토와도 관련이 있다. 검토 당국은 무기의 특성, 예상 용도 및 예측 영향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가 일정한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또한,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기의 살상 반경이 매우 넓은 경우, 동 무기를 전투수단 및 방법의 무차별적인 사용 금지⁴³ 및/또는 비례의 원칙을⁴⁴ 위반하지 않으면서 민간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단일 또는 복수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기를 승인하는데 있어, 검토 당국은 일정한 조건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 무기와 관련된 교전규칙 또는 운영절차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2.2.1 국제조약법에 따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조약에서 명시하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여러 일반적인 금지 또는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제36조에 나타나 있듯이 제1추가개정서 체결국들은 조약에서 명시하는 규칙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⁴⁵

-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5조(2))
-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5조(3))와 제55조).
-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으로

41 상동, 규칙 84, 85, 287, 289.

42 상동, 규칙 86, 292.

43 본 지침서의 1.2.2.1장에 명시된 제1추가개정서 제51조(4)(나), (다)와 1.2.2.2장에서 제시하는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하는 관습국제법 규칙을 참고.

44 본 지침서의 1.2.2.1장에 명시된 제1추가개정서 제51조(5)(나)와 1.2.2.2장에서 제시하는 관습국제법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참고.

45 제1추가개정서의 일부 조항은 본 지침서의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제51조(4)(나)).

-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은 금지된다 (제51조(4)(다)).
-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은 금지된다 (제51조(5)(가)).
-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은 금지된다 (비례의 원칙) (제51조(5)(나)).

1.2.2.2 관습국제법에 따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의 일반적 금지 또는 제한

관습국제법에 따른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금지 또는 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전투수단 및 방법의 사용은 금지된다.⁴⁶
- ➔ 무차별적인 성질의 무기 사용은 금지된다.⁴⁷ 이에에는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수단 및 국제인도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그 영향을 제한할 수 없는 전투수단이 포함된다.⁴⁸
- ➔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은 금지된다.⁴⁹
- ➔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은 금지된다.⁵⁰
- ➔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은 금지된다 (비례의 원칙).⁵¹

46 Henckaerts와 Doswald-Beck (eds.), 본 지침서의 주석 30, 규칙 70, 237 참고.

47 상동, 규칙 71, 244. 규칙 11, 37 참고.

48 상동, 규칙 12, 40

49 상동, 규칙 13, 43.

50 상동, 규칙 45, 151. 동 규칙의 주요내용에서는 다음을 언급한다: "미국은 동 규칙의 첫 번째 부분의 '완강한 반대자' 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동 규칙의 첫 번째 부분을 핵무기 사용에 적용하는데 있어 완강한 반대자들이다." 규칙 44 참고.

51 상동, 규칙 14, 46.

1.2.2.3 인도의 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 (“마르텐스 조항”)

제1추가협정서 제1조(2), 1907년 헤이그 협약 (IV) 전문(前文), 1899년 헤이그 협약 (II) 전문(前文)에 명시된 바에 따라 무기가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소위 “마르텐스 조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1추가협정서 제1조(2)는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의 적법성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 “마르텐스 조항의 지속적인 존재와 적용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⁵² 마르텐스 조항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군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고⁵³ 평하였다. 또한, 재판소는 마르텐스 조항이 관습국제법을 대표한다고 판결하였다.⁵⁴

현존하는 국제인도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무기가 그 자체로서 인도원칙 또는 공공양심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마르텐스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 적법성 검토에서 고려해야 하는 경험적 데이터

특정 무기의 적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검토 당국은 무기의 설계와 특성 (전투 “수단”)뿐만 아니라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투 “방법”) 검토하여야 하고, 무기의 영향은 무기의 설계와 더불어 동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나타남을 명심하여야 한다.

검토 대상인 무기가 특정한 금지 또는 제한 (상기 1.2.1장 참고) 또는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규칙 (상기 1.2.2장 참고)을 한 개 또는 그 이상 위반하지는 않는지 평가하기 위해, 검토 당국은 광범위한 군사, 기술적 요소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토 과정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⁵⁵

각 고려분야와 관련된 국제인도법의 일반적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52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1996년 7월 8일, 87장.

53 상동, 78장.

54 상동, 84장.

55 적법성 검토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의 중요성은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에서 채택된 인도주의 행동 의제, 행동과제 2.5.2장 및 주석 17에 언급된 무기 적법성 검토에 관한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on Legal Reviews of Weapons)와 SIrUS 프로젝트에서 강조되었다. 본 지침서의 2.2장 참고.

1.3.1 무기의 기술적 사양

적법성 평가는 무기의 기술적 사양과 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무기의 기술적 사양 일체;⁵⁶
- 무기의 설계된 또는 의도된 사용 목적 - 목표물 유형 포함 (예. 대인 또는 대물; 특정 목표물 또는 지역 등);⁵⁷
- 파괴, 손상 또는 상해 수단.

1.3.2 무기의 기술적 성능

검토 무기의 기술적 성능은 무기가 특히 무차별적인 효과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목표물설정 방식의 정확성과 신뢰성 (예. 실패율, 미폭발 무기의 민감도 등);
- 무기의 파괴효과가 미치는 범위;
- 무기의 예상 가능한 영향을 특정 목표물로 한정할 수 있는지 또는 무기의 시공간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무기의 군사적 목표가 실행된 후 민간인에 대한 위험은 얼마나 되는가도 포함됨).

1.3.3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신무기가 어떠한 유형의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가는 무기의 상해 방법 (손상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⁵⁸

- 무기를 원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 야기되는 부상의 정도 (창상탄도학 기준);
- 무기를 원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 희생자 사망률;
- 무기의 특정한 설계로 인해 신체적 손상, 장애 또는 용모손상이 유발되는지 여부.

신무기가 폭발 또는 발사체 이외의 수단으로 손상을 야기하거나 기존의 적법한 무기 및 전투수단과는 질적, 양적 차원에서 상이한 영향을 인체에 미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⁵⁹

56 무기의 설계, 구성, 점화장치 외에도 기술적 사양에는 "반경, 속도, 모양, 자재, 파편, 정확성, 기대효과 및 발화, 발사, 또는 투하에 사용되는 시스템 또는 하부시스템의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US Department of Air Force Policy Directive 51-402, Weapons Review, 1994년 5월 13일 (US Department of Air Force Policy Directive 51-4, Compliance with the Law of Armed Conflict, 26 April 1993 and US Department of Defence Directive 5100.77, DoD Law of War Program, 9 December 1998 실행을 위한 지침), subsection 1.2.1 참고.

57 일부에서는 이를 "임무" 또는 "군사목적"이라고 부른다.

58 미공군 지침 1.2.1장을 참고. 동 내용은 검토담당자에게 특히, "인체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손상 (가능시 의료기록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9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는 국가들이 "의무요원이 잘 알지 못하는 영향을 인체에 미치는 모든 신 무기, 전투수단 및 방법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도주의 활동 의 제 2.5.2장. 또한, 무기 적법성 검토에 관한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on Legal Reviews of Weapons) 및 SIrUS 프로젝트는 "폭발, 발사 또는 화상으로 상해를 가하는 무기의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수단을 통해서 상해를 가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무기에 대해 철저한 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회의 보고서 p. 8와 본 지침서의 주석 17을 참고).

- 무기가 인간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였는가;
- 무기가 손상을 야기하는 방식이 희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무기가 무력충돌에서 사용되는 경우, 전장에서의 사망률은 어떻게 예상되며, 병원에서의 사망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무기가 희생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기적인 또는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또는 예상되는가;
- 무기가 미치는 영향을 전문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으며, 전장에서 부상의 관리가 가능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의료설비를 갖춘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가능한가

상기 언급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무기가 인체에 미치는 기타 영향은 검토 당국이 검토 중인 무기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칙에 따라 무기의 적법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무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동 무기가 의도하는 군사적 목적 또는 예상되는 군사적 이점과 비교하는 작업이 수반되기도 한다.⁶⁰

1.3.4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중인 무기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자연환경에 과도한 우발적인 손해 또는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⁶¹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무기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가?
- 무기가 자연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손상을, 어떠한 범위만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 무기로 인한 자연환경의 손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러한 손상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즉, 환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한, 원 상태로 복구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가?
- 무기로 인한 환경파괴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무기가 자연환경을 파괴 또는 훼손하도록,⁶² 또는 환경을 변형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는가?⁶³

60 관습국제인도법에 관한 ICRC 연구는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특성을 가진 전투수단의 금지는 무기가 전투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실제로 무기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고통은 동 규칙을 위반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수의 국가들은 동 규칙을 통해 군사적 필요와 인간에게 미치는 고통 간에 일정한 균형을 맞춰야 하며, 과도한 상해 또는 고통은 국가가 추구하는 군사적 이익을 벗어나므로 동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무기가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동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한다." Henckaerts와 Doswald-Beck (eds.), 본 지침서의 주석 30, 규칙 70, 240 (주석 삭제).

61 본 지침서의 1.2.2.1장에 언급된 제1추가규정서 제35조(3), 제55조와 1.2.2.2장에 언급된 관습국제법 규칙을 참고. 환경적 요소와 관련하여 관습국제인도법에 관한 ICRC 연구 규칙 44는 국가들이 특히: "특정 군사작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쟁 당사자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우발적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예방적 조치로부터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Henckaerts와 Doswald-Beck (eds.), 본 지침서의 주석 30 참고.

62 주석 50의 관습국제법 규칙을 참고.

63 본 지침서의 1.2.1.1장에 제시된 ENMOD 협약을 참고.

2. 검토 체계의 기능적인 고려사항

무기 검토 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체계 수립방식, 구조, 구성, 검토 절차, 의사결정 및 기록관리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고려사항들이 있다. 국가별 관행에 관한 자료는 해당 국가들이 공개한 절차로 국한된다.

2.1 검토 체계는 어떻게 수립하는가?

2.1.1 입법, 규제, 행정명령, 훈령 또는 지침으로 수립하는가?

제1추가 의정서 제36조는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신무기 적법성 검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각 국가는 이러한 적법성 검토 의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입법, 행정, 규제 및/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자국의 판단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제36조에 따라 최소한 각국은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하고, 제1추가 의정서 제84조에 따라 동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계약국들이 요청할 수 있다.⁶⁴ 공식 절차의 수립은 신무기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과 관련하여 적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확립된 체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기 검토 절차를 제공한 6개의 국가들 중, 1개국은 정부 법령⁶⁵에 의거하여 검토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나머지 5개국은 국방부 지침 또는 명령을 근거로 체계를 수립하였다.⁶⁶

2.1.2 누가 검토 체계 수립을 주관하는가?

적법성 검토 체계는 신무기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을 주관하는 정부 부서 - 대개는 국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 부처가 수립하고 관련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국방부가 무기 취급 지침을 발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검토 체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방부 주도 하에 검토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부처들이 검토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1개국에서 채택, 사용하고 있다.⁶⁷ 또한, 검토 체계 수립 업무와 조달청과 같은 다른 관련 부처에 위임할 수 있다.

어떠한 정부 부처가 검토 체계 수립을 주관하든지 간에 검토 당국이 관련 법규제와 전문성에 근거하여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체계 수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⁶⁸

64 주석 7과 96을 참고.

65 스웨덴 모니터링 법령 참고.

66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국방부는 “국방부령”을 통해 자국의 적법성 검토 체계를 수립하였고, 미국 국방부령은 3軍(육군, 해군, 공군)의 개별적인 지침을 통해 실행된다. 벨기에 국방부는 “일반명령”을, 호주 국방부는 “국방부지침”을 통해 자국의 적법성 검토 체계를 수립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8을 참고.

67 스웨덴은 정부 주도로 무기 프로젝트 관련 국제법 모니터링 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정부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스웨덴 모니터링 법령 8장을 참고.

68 본 지침서의 2.2.2장 참고.

2.2 검토 체계의 구조 및 구성

2.2.1 적법성 검토는 누가 수행하는가?

적법성 검토 수행의 책임은 관련 분야와 부처를 대표하는 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특수 기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검토 체계를 공개한 국가 중 4개국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⁶⁹ 이 중 2개국은 검토를 수행하는 상임 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의 “복합”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⁷⁰

다른 2개국은 1인 (1개국은 군사법관리처장 (Director-General of the Defence Force Legal Service), 다른 1개국은 무기 획득을 추진하는 군 부처의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이 검토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 책임자는 관련 분야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⁷¹

적법성 검토 범위에는 광범위한 전문성과 관점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무기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다양한 관련 분야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⁷²

검토 기구가 개인 또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든지 간에 적절한 자격, 특히, 국제인도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진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 내의 법률고문이 적법성 검토에 참여하거나 검토 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2.2 적법성 검토에 어떠한 부서 또는 분야가 참여하는가? 어떠한 전문가들이 검토에 참여하는가?

적법성 검토를 위원회 또는 개인이 수행하던지 간에 적법성 검토는 관련 분야, 부처 및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본 지침서 제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률, 군사, 의료, 군사기술 및 환경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은 신무기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평가하고, 동 무기의 적법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⁷³ 그러므로 국방부, 군부 관련 분야 외에도 외교 (특히, 국제법 전문가), 의료 및 환경 부처의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민간의 자문도 필요할 수 있다.

검토 체계를 공개한 국가 중 3개국에서는 국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된 분야의 담당자들이 상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방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고문 (예. 법무감) 외에도 군 의무기관의 군의관⁷⁴, 작전 수립, 병참, 공병을 담당하는 부처의 전문가 등이 상임 위원으로

69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주석 8 참고.

70 벨기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취할” 책임이 있다: 벨기에 일반명령 2(b)장 참고. 노르웨이는 국방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조직에게 보고, 자문을 제공한다: 노르웨이 국방부령 2.1장 참고.

71 호주 국방부지침 6장, US, Department of Defence Instruction 5500.15, subsection IV.A. 참고. 미국에서 특정 군부의 법무감이 신무기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등 다른 유관 군 부처와 협조하여, 해설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72 Lt. Col. McClelland, “The review of weap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of Additional Protocol I”, 주석 8 참고, p. 403.

73 주석 55 및 해당 내용 참고.

74 벨기에 일반명령 4(a)(1) 참고.

참여한다.⁷⁵ 또한, 이러한 검토 체계는 다른 정부 부처 또는 민간 전문가들이 필요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⁷⁶

또한, 다른 국가는 비국방부 출신의 전문가들 - 특히, 무기 과학자, 공중위생국 공무원, 외교부의 국제법 전문가 등을 검토 기구의 상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다.⁷⁷

1인이 적법성 검토를 담당하는 2개국 중 1개국에서는 의료, 전력개발, 과학기술 등을 담당하는 국방 기관이 적법성 검토 책임자에게 “기술적인 조언, 탄도 정보, 무기 영향 분석 및 평가 결과, 적절한 전문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국에서는 검토 책임자가 의무관 및 다른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⁸

2.3 검토 과정

2.3.1 어떠한 단계에서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가?

제36조는 그 적용 시기에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동 조항은 신무기의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 단계에 있어 신무기 적법성 평가가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는 무기 조달 과정의 전 과정, 특히, 연구 단계 (예. 구상 및 연구), 개발 단계 (예. 시제형 개발 및 테스트), 획득 단계 (“상용화된 무기” 조달 포함)의 초기 단계가 포함된다.⁷⁹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음을 의미한다:

(무기 생산국은 자국용 또는 수출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동 무기의 구상/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하고, 이후 기술적인 개발 단계 (시제형 개발 및 테스트)

75 노르웨이는 군사작전 및 긴급대처관리부 (the Section for Operative Planning of the Department of Operational and Emergency Response Planning), 합참본부 (the Joint Operative Headquarters), 국방대학 (the Defence Staff College), 군사병참기구 (the Defence Logistical Organisation) 및 국방연구소 (the Defence Research Institute)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노르웨이 국방부령 4.2장 참고.

76 벨기에 일반명령 4(c), 노르웨이 국방부령 4.3장 참고.

77 스웨덴: Danish Red Cross, 주석 8, p. 2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www.sweden.gov.se) 참고.

78 호주 국방부지침 6장과 미국 사례 참고. 미육군 규정 5(d)장 - (“법무감 (the Judge Advocate General)의 요청에 따라, [공중위생국 장관 (the Surgeon General)]은 무기 또는 무기 체계의 적법성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소견을 제공한다”).

79 호주 국방부지침 7장 (“중대한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개발그룹장 (the Chief of Capability Development Group))]은 동 프로젝트의 주요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 걸쳐 적법성 검토를 요청할 책임이 있다.”); 벨기에 일반명령 5(a)장 (“군에서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을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하는 경우, 동 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과 관련하여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위원회에 적법성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이는 획득 또는 채택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공식 영문번역)); 노르웨이 국방부령 2.3장 (“적법성 검토는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작전요구사항을 파악한 경우, 군사목표가 정의된 경우, 기술적, 필요 자원, 재정적 요건이 결정된 경우, 구상/연구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한다.”); 영국 군사편람 p. 119, 6.20.1 (“영국에서 무기 검토 과정은 신 전투수단 및 방법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고, 조달 절차로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미공군 지침 51-402, 1.1.1장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은 개발, 구매, 제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무기 일체와 공군이 변형하는 무기 일체는 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국제법에 따른 적법성 검토를 실시한다.”) 1.1.2장 (“획득 과정에 있어 연구개발 단계를 포함하여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부터...”).

에서도 검토를 수행한다.⁸⁰

(무기 구입국은 다른 국가를 통해 또는 “상용화된 무기” 조달과 같이 일반적인 시장을 통해 조달하던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구매 대상 무기의 연구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검토를 시작하여야 한다. 무기 구입국은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 자체적인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무기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무기 판매사, 제조사의 입장 또는 다른 국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⁸¹ 그러므로 무기를 구매하기 이전에 무기와 관련된 모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기존 무기가 기술적으로 변형 또는 실전 용도가 변형된 무기를 획득하려는 국가는⁸²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안된 변형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 검토 단계에서 검토 당국은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으로 제안 또는 예상되는지 - 즉, 무기의 전투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에서 명시하는 바 외에도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법적 검토를 실시하면, 추후에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이 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무기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 (및 수년 간의 시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매조달 과정의 각 단계마다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무기의 기술적인 특성과 예상 용도는 동 무기의 개발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 과정에서, 또한, 조달 후, 무기의 작전성능 또는 효과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재검토를 해야 한다.⁸³

2.3.2 적법성 검토는 누가, 어떻게 시행하는가?

무기의 연구, 개발, 획득, 변경 또는 채택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상기 제시된 단계에 따라 검토 기구에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통보서⁸⁴, 자문 요청서⁸⁵ 또는 적법성 검토 요청서⁸⁶를 이용, 신청한다.

또한, 검토 당국은 외부의 요청 없이 자체적으로 적법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⁸⁷

80 벨기에 일반명령 5(a)장 참고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획득 또는 채택 이전에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US Department of Defence Directive 5500.15 IV.A.1장 ("적법성 검토는 생산과 관련된 최초 계약을 위임하기 이전에 수행한다").

81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해설 1473장 참고. 영국 군사편람 p. 119, 6.20.1장 참고 ("이러한 의무 [제1추가의정서 제36조]는 무기 생산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82 미공군 지침, 1.1.1장 참고: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은 " 개발, 구매, 제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무기 일체와 공군이 변형하는 무기 일체는 분쟁 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국제법에 따른 적법성 검토를 실시한다." (강조는 필자). 또한, 호주 국방부지침 10장 참고 ("무기의 실전용도 변형에 대한 제안은 본 지침에 따라 심사한다"). 주석 21 참고.

83 벨기에 일반명령 5(i)장 참고 ("위원회 검토 후, 검토 건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상기 절차에 따라 해당 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위원회에 재요청한다." (비공식 영문번역)); 노르웨이 국방부령 2.3장 참고 ("추후 단계에서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실시한다").

84 스웨덴 모니터링 법령 9장을 참고.

85 노르웨이 국방부령 4.6장을 참고.

86 호주 국방부지침 7장 및 8장과 벨기에 일반명령 5(b)를 참고.

87 노르웨이 국방부령 4.3장 참고. 스웨덴의 적법성 검토 기구 또한 자체적으로 적법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Danish Red Cross, 본 지침서의 주석 8, p. 28 및 I. Daoust et al., id., p. 355를 참고.

2.3.3 검토 중인 무기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출처로부터, 어떻게 수집되는가?

신무기 연구, 개발, 획득 또는 채택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은 적법성 검토 건의 모든 단계별로 동무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 특히 상기 1.3장에 제시된 정보를 적법성 검토 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검토 당국은 검토를 수행,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관련 정부 부처 또는 외부 관계자에게 요청, 획득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테스트 또는 실험을 지시할 수 있다.⁸⁸

2.4 의사결정

2.4.1 적법성 검토 의견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본 내용은 검토 당국이 개인이 아닌 위원회인 경우 적용된다. 이상적으로 검토 의견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른 의사결정 절차 - 투표, 다수의견서, 소수의견서, 또는 위원장에게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4.2 검토 당국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 것인가 또는 권고사항으로 취급하는가?

검토 당국은 신무기가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검토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 결과가 없어도 신무기 획득을 계속 추진하여도 된다는 주장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검토 당국이 신무기가 자국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판단한 경우,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동 무기의 개발 또는 획득은 중단되어야 한다.⁸⁹

2.4.3 검토 당국은 신무기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가?

제36조에 따라 검토 당국은 검토 중인 무기의 사용이 “일부 또는 모든 상황에 있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⁹⁰ 그러므로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신무기 사용이 금지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토 당국은 무기의 작전용도에 제한을 두고, 이를 교전규칙 또는 표준 사용 절차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동 무기를 승인하거나 무기를 변형한 후에 승인을 할 수 있다.⁹¹

88 미육군 규정 5(b)(3), (5)장 참고 -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의 요청시, 무기 장비/물자생산자는 “각 무기 또는 무기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 중인 무기 또는 무기 체계에 대해 창상탄도학 등의 실험”을 수행한다. 호주 국방부지침 제6장 내지 제8장, 벨기에 일반명령 5(e)장 참고.

89 미국의 경우, 적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무기를 획득할 수 없다: 미해군 지침 2.6장을 참고 (“그 어떠한 무기 또는 무기 체계도 적법성 검토 없이 획득 또는 배치할 수 없다”). 호주 국방부지침 5장 및 11장 참고.

90 본 지침서의 1.1장 참고.

91 예를 들어, Swedish Review Ordinance 제7장은: “무기 프로젝트가 국제인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동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부처에게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설계를 수정하거나, 다른 무기 프로젝트를 고려하거나 또는 동 무기의 작전용도에 제한을 가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2.4.4 검토 당국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취급하는가 또는 재검토 / 재의결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하는가?

자국의 검토 체계를 공개한 국가들 중 2개국은 검토 당국의 결정에 재심의/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⁹² 이와 같이 재심의 요청 체계를 두는 경우, 재심의 또는 재검토 기구가 국제인도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적인 근거에 따라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기록관리

2.5.1 검토 결과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검토 당국은 검토를 실시한 무기에 대한 모든 의견과 결정을 기록, 관리하는 경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기록을 관리하면 검토 당국은 과거 내린 결정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검토 중인 무기가 과거 검토한 무기가 변형된 것인 경우 과거 기록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국의 검토 체계를 공개한 국가들 중 2개국은 검토 당국이 적법성 검토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⁹³ 또한, 최소한 다른 1개국은 정부 결정을 기록, 보관해야 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의무에 따라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⁹⁴

2.5.2 검토 기록에 누가, 어떠한 조건 하에 접근할 수 있는가?

검토 기록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접근을 허용할지, 누구에게 접근을 허용할지는 각 국가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해당 무기가 대외비로 분류되는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검토 기록을 공개할지 여부, 또한, 공개시 누구에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타 요인들을 포함하여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 정부 부처간 투명성, 국민과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투명성;
- 다른 국가들과의 경험 공유;

92 US Department of Defence Directive 5500.15, at subsection IV.C는 국방부장관, 군 참모총장 (the Secretary of a Military Department), 군사 연구 및 엔지니어링 국장 (the Director of Defence Research and Engineering), 시설 및 병참 국방부차관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ce (Installations and Logistics)) 또는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감의 의견을 국방부 법무관리관 (General Counsel of the Department of Defence)이 검토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스웨덴 모니터링 법령 제10장은 검토 결정은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93 호주 국방부지침 제13장은 군사법관리처장 (Defence Force Legal Service의 Director-General)은 "모든 적법성 검토 내용 사본과 정본을 포함하는 무기 검토 기록서 (Weapons Review Register)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US Department of Defence Instruction 5500.15, subsection IV.A.2에서는 각 법무감 (Judge Advocate General)은 "본인이 발표하는 검토 기록 또는 의견을 영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공군 지침 1.1.3장, 미육군 규정 5(e)(2)장 및 미해군 지침 2.6장을 참고.

94 벨기에 Law on Archives 참고, 1955년 6월 24일.

-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국제인도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 - 특히, 검토 중인 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국의 검토 체계를 공개한 국가들 중 최소 4개국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명시하는 자국 법률에 따라 검토 당국의 결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처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⁹⁵ 그러나 이러한 법률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적법성 검토를 수행하는 국가가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제1추가개정서 제84조에 따라 동 의정서의 다른 체약국들과 검토 절차를 공유하여야 한다.⁹⁶ 이와 관련하여 제네바협약의 모든 체약국들이 참여한 제27차 및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는 국가들이 적법성 검토 체계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ICRC가 이러한 교류를 촉진하도록 촉구하였다.⁹⁷

95 미국에서 대부분의 검토 보고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된다: H. Parks, 본 지침서의 주석 17 참고. 스웨덴의 경우, 위원회 보고서에 정보공개법 (the Freedom of the Press Act)이 적용된다: Danish Red Cross, 본 지침서의 주석 8, p. 28 및 I. Daoust et al., id. p. 355를 참고. 벨기에의 경우, 정부의 정보 공개와 관련된 1994년 4월 11일 법 (Law of 11 April 1994), 호주의 경우, 1982년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을 참고.

96 제네바협약 추가개정서 해설 1470장, 동 문서의 주석 12 참고. 제84조는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체약 당사국은 가능한한 조속히 수탁국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의정서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법률 및 규칙은 물론 본 의정서의 공식번역문을 상호전달하여야 한다."

97 인도주의 활동 의제 2.5.3장 참고.

연락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제인도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언, 지원 및 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표단이나 아래 제시된 주소를 통해 ICRC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중국北京市建国门外大街 9 号

齐家园外交公寓 B2

우편번호 : 100600

전 화 : (86 10) 8532 3290

팩 스 : (86 10) 6532 0633

이 메 일 : beijing.bej@icrc.org

홈페이지 : www.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본부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 Avenue de la Paix

1202 Geneva, Switzerland

Tel. +41 22 734 6001 (Switchboard)

+41 22 730 2667 (Mines-Armes Unit)

+41 22 730 2321 (Advisory Service)

E-mail : weapons.gva@icrc.org

<http://www.icrc.org>

제28차 국제적십자적신월회의 (2003. 12. 2~6, 제네바)

인도주의 활동 의제 최종 목표 2.5

최종 목표 2.5 - 국제인도법에 따른 신무기의 적법성 보장

무기개발 기술의 빠른 발달 속에서 무차별적인 무기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고 전투원들을 불필요한 고통과 금지된 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신무기, 전투 수단 및 방법은 엄격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활동 제안

- 2.5.1 1997년 제1추가 의정서(제36조)에 의하면, 계약당사국은 신무기, 전투 수단 및 방법의 적법성을 결정할 검토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도 그러한 검토 과정의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검토는 군사, 법, 환경, 보건 관련 고려 사항 등 다방면에 걸친 접근을 필요로 한다.
- 2.5.2 국가는 의료인들도 익숙하지 않은 보건적 영향을 야기하는 모든 신무기, 전투 수단 및 방법을 특정한 정밀검사와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 2.5.3 ICRC는 검토 과정에 관한 자발적인 경험 공유를 제도화한다. 이미 검토과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 방면에서 ICRC와 협력할 것을 장려한다. ICRC는 정부 전문가와 함께 아직 검토 과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 워크숍을 조직한다.

부록 2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상트 페테르부르크 선언, 상트 페테르부르크, 1868년 11월 29일 / 12월 11일

러시아제국 내각의 제안에 따라 국제군사위원회(International Military Commission)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문명국가들 간에 발생한 전쟁 시에 특정 탄약의 사용을 금지할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모였으며, 위원회는 공동 합의에 의해 전쟁의 필요성 보다 인도주의적 요청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기술적 제한을 확정하였고, 서명자는 각 정부의 명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언할 권한을 갖는다: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전쟁의 참혹함을 가능한 한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문명화의 진행;
- 국가가 전쟁 시 달성해야 할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부상당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 이러한 목적은 쓸데없이 부상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야기하거나 그들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무기의 채택으로 인해 도를 지나치게 된다는 것;
- 결국 그러한 무기의 채택은 인도의 법에 반한다는 것;

체약당사국들 간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서로 자신들의 군대 혹은 해군이 폭발성이 있고 폭발적이거나 가연성이 있는 400g 이하의 어떠한 탄약이든 채택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대표단을 보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국제군사위원회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이 의무를 승인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 의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때 체약 혹은 가입 당사국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비체약당사국 혹은 가입할 의사가 없는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약 혹은 가입 당사국 사이의 전쟁에 비체약 혹은 비가입 국가가 어느 한쪽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사라진다.

체약 혹은 가입 당사국은 그들이 세운 원칙을 유지하고 전쟁의 필요성과 인도의 법 사이의 조화를 위해, 과학이 군대의 무장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미래의 발전을 고려한 정확한 제안서가 작성될 때 마다 양해를 보류한다.

제1추가의정서 중 발췌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하여 (제1추가의정서), 1977년 6월 8일)

제1조 제2항 [마르텐스 조항]

2.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연원하는 국제법원칙의 보호와 권한 하에 놓인다.

제35조 - 기본 규칙

1. 어떤 무력충돌에 있어서도 전투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다.
2.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자연환경에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심대한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6조 - 신무기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결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결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제48조 - 기본규칙

민간주민과 민간물자의 존중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돌당사국은 항시 민간주민과 전투원,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을 구별하며 따라서 그들의 작전은 군사목표물에 대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한다.

제51조 -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 및 민간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제 규칙에 추가되는 아래 규칙들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된다.
2.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
- (...)
4. 무차별공격은 금지된다. 무차별공격이라 함은
 - 가.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 나. 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 다. 그것의 영향이 본 의정서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5. 그 중에서도 다음 유형의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 내에 위치

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 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

나.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

제55조 - 자연환경의 보호

1.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 중에 주의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 금지를 포함한다.

(…)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RC는 분쟁 발생 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ICRC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체이다.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중국北京市建国门外大街 9 号
齐家园外交公寓 B2

우편번호 : 100600

전 화 : (86 10) 8532 3290

팩 스 : (86 10) 6532 0633

이 메 일 : beijing.bej@icrc.org

홈페이지 : www.icrc.org (www.redcross.or.kr/icrc)

© 국제적십자위원회, 2009년 3월